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 · 개 정 연 협

- 2013년 1월 17일 제정
- 2013년 8월 19일 개정
- 2014년 4월 2일 개정
- 2015년 8월 20일 개정
- 2017년 1월 16일 개정
- 2019년 6월 11일 개정
- 2020년 1월 29일 개정
- 2020년 9월 22일 개정
- 2023년 7월 2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가 시행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공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임, 임기만료, 미등록 등의 사유로 현재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도 포함한다.

1. 협회 임직원(다만 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 <개정 2023. 7. 25.>
2. 시도협회, 연맹단체 및 소속 임직원(다만 직원은 포상 관련 조항에만 적용) <개정 2023. 7. 25.>
3. 협회에 등록된 단체(팀)와 선수, 지도자 등 그 소속원
4. 심판, 중개인 등 기타 협회의 행정적용을 받는 대상

제3조 (심의기관)

- ① 협회가 인정하는 징계심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1. 공정위원회

2.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공정위원회
 3. 기타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징계심의 기구
- ② 공정위원회는 협회가 관장하는 징계사안의 심의를 다루는 기구로서, 소 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징계처분을 다루도록 할 수 있다.
- ③ 시도협회, 연맹단체의 공정위원회는 해당 협회나 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한 대회 또는 리그에서 발생한 사건, 관할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한 사건 등 각 단체의 관할 범위 내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관장한다.
- ④ 기타 정관 및 관련 규정에서 인정되는 징계심의 기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징계 권한을 갖는다.
 2. 개별 대회조직위원회는 해당 대회 규정상에 정해진 긴급제재 처분을 다룬다.

제4조 (징계대상 행위의 성립과 처벌)

- ① 징계대상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의 성립과 이에 대한 처벌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 7. 25.>
- ② 위원회는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8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의결 전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접수일이 된다. <개정 2023. 7. 25.>
- ③ <삭제 2023. 7. 25.>

제5조 (증거우선의 원칙)

- ① 모든 징계는 그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 ② 공정위원회는 증거의 인정 및 판단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구속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삭제 2023. 7. 25.>

제7조 <삭제 2023. 7. 25.>

제2장 공정위원회

제8조 (기능)

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 정관 제17조, 제54조에 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긴급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징계의 심의, 결정과 집행 관련 사항
2. 경기와 관련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징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의 처리
3. 회원단체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4. 징계심의 사항 등에 대한 조사
5.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건의 및 위임된 건의사항 처리
6. 필요시 체육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심의
7. 전국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8. 기타 징계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 건의 및 자문

제9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 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 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7. 25.>
 1. 「국민체육진흥법」 제 2 조제 9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 ④ <삭제 2023. 7. 25.>
- ⑤ 협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 ⑥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 7. 25.>

제10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총회일 전날이다. <개정 2023. 7. 25.>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25.>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7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의6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 (회의소집)

-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11조의2 (경비의 지급)

협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의3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의4 (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③ 회의의 일시·장소·참석자·안건·토의내용·의결결과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에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의5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의6 (제척·회피·기피)

-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1조의7 (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호의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2조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징계권)

- ① 시도협회는 및 연맹단체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소속 회원에 한하여 징계를 한 경우 징계 확정 후(재심이 진행된 경우 재심 확정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보고된 각 연맹단체가 내린 징계처분 적용범위 및 수위에 대한 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 ③ 각 연맹단체의 징계 심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 ④ <삭제 2023. 7. 25.>

제12조의2 (징계요구)

-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각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연맹단체 또는 시·도협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3장 징계

제13조 (종류)

- ① 대상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대상	징계의 종류	정의
등록단체(팀)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이 불가함.
	출전정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경기수의 출전을 정지시킴.
	하위리그 강등	징계의 사유로 팀의 소속리그를 하위 단계로 격하시킴.
	실격	해당 대회에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선수 개인 기록을 제외한 팀의 기록은 무효화함.
	승점감점	팀이 경기에서 취득한 승점을 감점 또는 무효화시킴.
	경기제한	무관중 경기진행, 홈경기 개최금지 또는 제3지역에서 경기를 진행토록 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함.
	벌금	별에 대신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 100만 원 이상으로 함.
	견책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등록단체의 소속원(선수, 지도자, 임원), 심판 등 협회의 행정 적용을 받는 자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동안 등록이 불가함. (팀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
	출전정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또는 일정 경기수의 출전을 정지시킴. (팀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협회에서 운영하는 각급 대표팀의 일원으로 선발될 자격을 제한함.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 50만 원 이상으로 함.
	사회봉사	자원봉사 인증 가능한 봉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
	견책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협회,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임원	제명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명부에서 삭제함
	해임	해당 직위를 박탈함.

	자격정지	일정 기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팀벤치, 선수대기실, 본부석 등 경기장 시설 내 입장 금지)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 50만원 이상으로 함.
	견책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제명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함.
	자격정지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함.
	권리제한	일정기간 단체로서의 권리를 제한함.
	벌금	징계의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하며 그 금액은 금 300만 원 이상으로 함.
	견책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적함.

주) 위 징계에 부가하여 사회봉사, 교육수강, 징계부가금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자격정지의 경우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도자, 선수, 임원, 심판, 중개인 등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의 정지를 의미한다.
- ③ 경기중 경고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심판의 고유 권한이며, 대회규정에 의한다.
- ④ 경기중 경기몰수, 재경기, 경기무효 등 공정위원회 규정에 포함할 수 없는 조치는 대회규정으로 정한다.
- ⑤ 권리제한 및 자격정지 :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가 협회정관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였을 때에는 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⑥ 기피대상자 : 협회 회원단체나 그 소속원이 아닌 자로서 협회의 활동에 해악을 끼치고 축구계의 명예를 훼손하여 축구의 발전과 축구인의 권익을 해하는 자로서 기피의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⑦ 본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징계유형은 FIFA, AFC,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징계 사유 및 대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인권 침해, 괴롭힘

9. 선거 관련 비위 행위

10. 기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②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 제4항 및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협회 임원, 연맹단체 임원 및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한다.
- ③ 협회, 각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 ④ 제12조의2 제2항과 제22조 제7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 ⑤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협회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협회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도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 ⑥ 징계 처리의 대상이 학교폭력가해 학생선수로서 해당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제 17 조 제 1 항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14조의2 (징계기관의 분류 등)

- ① 위원회는 연맹단체가 1 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체육회에서 협회 또는 시·도체육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 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 기관(연맹단체의 경우 위원회, 시·도협회의 경우 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 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 ④ 시·도협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체육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위원회가 시·도협회로 제12조의2 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협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15조 (제소)

- ①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감독관, 심판, 관련 팀의 대표자가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할 수 있다. 단, 경기 중의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경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소는 피해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 ③ 위 제소는 별지 1호 서식을 참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의 심의)

- ① 징계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인지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할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협회의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제25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5.>

제17조 (출석요구)

- 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권익 침해 사안"이라 한다)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진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18조 (심문과 진술권)

-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19조 (징계의 정도 결정)

-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부터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 ② 위원회(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 14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및 제 8 호부터 제 10 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 ③ 위원회(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 14 조 제 1 항 제 7 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19조의2 (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① 제 14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관계단체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제 21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해당 단체는 행위발생 직후 즉시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단체는 제 2 항에 따른 통보 후 48 시간 이내에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징계혐의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혐의자가 제 5 항에 따른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 22 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1 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대회 중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대회 주관 단체장은 임시 위원회(질서대책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임시 위원회 구성 요건은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달리 할 수 있다.
- ⑧ 제 7 항에 따른 임시 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대회 참가 제한과 같은 긴급제한 조치에 한한다.
- ⑨ 임시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징계할 경우 해당 단체 위원회에서 동 대회 종료 후 30 일 이내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 22 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20조 (징계의 의결 및 통보)

- ①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협회는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 징계혐의자 소속 연맹단체 또는 시도협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권익 침해 사안의 경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종류,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제 19 조 및 제 23 조 제 1 항)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1 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25.]

제21조 (징계의 효력 등)

- ① 위원회, 연맹단체 또는 시도협회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제22조에 따라 징계혐의자 등이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재심의 완료 전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단,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인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 ④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활동이 제한된다
 1.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협회 및 관계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2.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3. 7. 25.]

제22조 (재심의신청)

- ① 징계혐의자는 연맹단체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시·도협회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시·도체육회에, 위원회의 최종 징계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각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 ② 연맹단체의 징계심의결과에 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연맹단체의 징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연맹단체에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해 연맹단체는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2호 서식 참조) 및 징계심의자료를 첨부하여 협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시·도협회/위원회의 징계심의결과에 대하여 징계 처분대상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시·도협회/위원회의 징계심의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도체육회/대한체육회에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재심의신청은 해당 징계 재심의 기관의 의결로써 최종 확정된다.
- ⑤ 연맹단체가 1 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 차 징계사항에 대하여 징계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감면할 수 없다. <신설 2023. 7. 25.>
- ⑥ 연맹단체가 1 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5.>
- ⑦ 위원회는 연맹단체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권한으로 재심의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는 1 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제23조 (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

- ① 제 2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가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별표 3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계 대상, 기준,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당시 혐의가 징계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 1 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실효된 것으로 한다.
 - ④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연맹단체 및 시·도협회가 감경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조문명 및 전문개정 2023. 7. 25.]

제24조 <삭제 2023. 7. 25.>

제25조 (징계 기준)

- ① 행위에 따른 유형별 징계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 ② 경기중 경고 및 퇴장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 경기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즉시 퇴장조치 한다.
 2. 한 대회에서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의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대회 운영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경기중 퇴장 당한 선수나 지도자는 해당 대회의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퇴장 행위의 경중에 따라 대회 주최기관 또는 조직위원회가 추가로 해당자에 대해 경기출전을 금지 할 수 있다.
 4. 한 경기에서 1회 경고를 받은 뒤 다른 반칙행위로 경고 없이 바로 퇴장을 당한 선수의 경우, 앞서 받은 경고는 유효하다.
 5. 팀의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퇴장당한 선수나 지도자는 위원회가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는 한, 다음에 참가하는 대회 첫 경기의 출전이 자동으로 금지된다.

제25조의2 (징계부가금)

- ① 위원회(연맹단체 및 시·도협회를 포함한다)는 제 21 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해당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 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 5 호 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 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내에 징계 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별지 제 6 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를 그 즉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 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 4 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⑥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 3 항 또는 제 5 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26조 (긴급제재)

- ① 경기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조치한다.
- ② 긴급 제재라 함은 경기와 관련하여 선수, 심판 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경기장 질서 유지 및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협회 공정소위원회가 팀, 지도자, 선수, 임원, 관중 등에 대해 취하는 즉각 조치를 말한다
- ③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대상자에 대해 퇴장 조치와 함께 필요시 해당 대회 잔여 경기 출전 금지 및 법질서 유지기관을 통한 제재 요청
 2. 특정팀의 개입에 의해 관중 난동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팀에 대해 긴급 제재 조치 및 필요시 추가로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 요청
 3. 긴급 제재 사건 발생 즉시 해당 상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④ 공정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긴급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위반 행위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후 최대 1개월 또는 4경기 이하 출전정지 조치
 2. 출전 정지 1개월 또는 4경기를 초과하는 징계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추가 징계 요청
 3. 긴급 제재 조치 후 즉시 위원회에 결과 보고
- ⑤ 위원회는 공정소위원회와 별도로 긴급 제재 조치로서 1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처분 결정시 위 제4항의 긴급 제재 조치 및 제5항의 출전정지 기간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산하여 징계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23. 7. 25.>**제4장 임원심의****제28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전국연맹 임원
2. 기타 위원회가 정관 등에 의하여 심의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대상

제29조(심의절차)

- ① 정관 등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전국연맹의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을 하고자 하는 회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또는 선출된 임원직 수행에 임원직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 ② 위 제1항에 따른 예외 적용 여부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31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심의 신청서
 2. 이력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 ④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6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 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0조(심의결과)

-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 ④ 위원회가 임원심의를 의결하고 심의 결과를 임원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의요구)

- ① 제29조의 의결에 따라 연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의신청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제32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33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상

협회 임직원 중 업무 수행이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2. 공로상

회원단체(시도협회, 연맹단체, 등록팀) 및 그 회원, 심판, 감독관 등 협회 관할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축구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

3. 감사상

협회의 임직원 및 회원단체의 회원 등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

4. 기여상

모범상, 공로상 및 감사상 대상이 아닌 자로서 축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

5. 기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상

[전문신설 2023. 7. 25.]

제34조(포상절차)

- ① 협회 임직원, 회원단체 또는 관련기관이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회는 공적조서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모범상, 공로상, 감사상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협회 포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포상의 종류별로 별지 제9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⑥ 포상시기는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며, 정기포상은 매년 실시하며, 수시 포상은

필요에 따라 특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35조(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포상)

- ① 시도협회는 자체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포상할 수 있고, 연맹단체는 소속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② 각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 직원에 대한 포상은 해당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명시된 인사위원회가 본 포상규정에 준하여 심의한다.
- ③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는 포상 후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포상보고서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3. 7. 25.]

제3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1. 17.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체육회 정계규정 및 각종 대회규정을 준용하며, 위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3조(시도협회 및 연맹의 적용)

시도협회 및 연맹은 자체 정계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3. 8. 19.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0.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27.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6. 1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9.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2.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7. 25.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은 본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혐의에만 적용한다.

제 소서

[별지 제1호 서식]

피제소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소속		직책	
제소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소속		직책	
제소 내용 :				
위와 같이 제소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재 심 의 신 청 서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제재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3. 7. 25.>

출석요구서

인적 사항	성명	소속	
		직위(급)	
주소	(연락처 :)		
출석이유			
출석일시			
회의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4.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위원회규정 제 17 조(출석 및 진술권의 부여)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3. 7. 25.>

징계부가금 결정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급)	성명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	(인)

*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등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3. 7. 25.>

징계부가금 감면 결정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 (인)				

의결주문 : 징계부가금은 ○ 배(○ 원)에서 ○ 배(○ 원)으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3. 7. 25.>

공 적 조 서

(앞 쪽)

성명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소속			
직위		직급	
추천부문		공적기간 ¹	
주요 공적(개조식으로 작성)			
공적확인 및 추천인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속		직위(직급)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¹ 공적기간은 추천부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수공기간 기입

(뒤 쪽)

공적 관련 경력²

경력기간(연월)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² 합산된 경력기간이 앞면의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3. 7. 25.>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공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위원회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서약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촉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3. 7. 25.>

포상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3. 7. 25.>

포상 보고서

번호	이름	소속	직위	포상명	포상일	포상 사유
위의 사람(단체)을 포상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별표 1] <개정 2023. 7. 25.>

유형별 징계 기준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① 금품 및 향응의 수수·요구·약속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협의금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③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협의금액이 500 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
④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협의금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협의금액이 500 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횡령· 배임	① 횡령·배임 등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협의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③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협의금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협의금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협의금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⑦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자격정지 3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5년 이상 – 제명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사건

(인사권 남용 및 채용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입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권 한 남 용	① 권한남용행위 등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③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④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경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⑥ 과실 및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직 무 태 만	① 직무태만행위 등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②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③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④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⑤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경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⑥ 과실 및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경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경우 등), 심판매수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 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① 승부조작 ³ , 편파판정 행위 등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벌금, 출전정지,
③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승점감점, 하위리그
④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강등,
⑤ 기타 승부조작, 편파판정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자격정지,
⑥ 심판매수(금품 공여 및 수수 등)						제명
⑦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⑧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³ '승부조작'이라 함은 승패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승부 또는 득점을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체육관련 입학비리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 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p>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p> <p>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p> <p>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 선수, 학부모, 소속 학교, 지도자 등 제 3 자에게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p> <p>④ 기타 학생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p>				제명		<p>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p>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기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입학 비리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6. 폭행·상해/폭언·모욕·위협 행위 등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 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폭행· 상해	① 선수, 심판, 지도자, 임원, 관중 등에 대한 폭행			5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기타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③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언· 모욕· 위협 행위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침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등)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경기장 출입 금지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p>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p> <p>② 가학적·변태적 행위</p> <p>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p> <p>④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p> <p>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p> <p>⑥ 반복적인 경우</p> <p>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p> <p>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 등을 원인으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p>			제명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워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8. 성추행⁴ 등 행위(7 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및 성희롱⁵ 등 행위(7,8 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기타 차별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 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성추행	① 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희롱	① 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출전정지 3개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3년 이하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별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 강등, 자격정지, 제명	

⁴ '성추행'이라 함은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⁵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9. 인권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수업권 등 침해) 및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무고 또는 위증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인권침해	① 선수 지도 중 흡연 또는 음주행위	경고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지도자에 한함)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		
	② 침해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침해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괴롭힘	① 괴롭힘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② 괴롭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출전정지 1년 이상 – 제명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10.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 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①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이외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벌금,
② 지위 또는 그 지위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출전정지,
③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						승점감점,
1) 금품, 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명	하위리그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강등,
3) 1) ~ 2)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격정지, 제명

11. 음주운전, 강화훈련·소집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 금지약물(도핑) 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음주운전	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②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명						
	⑥ 음주운전을 교사·방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음주소란	① 음주소란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②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음주소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금지약물(도핑) 행위	FIFA 및 AFC의 도핑방지규정(Anti – Doping Regulation)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규정 준용							

12. 불법도박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불법베팅 ⁶	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구매, 알선, 방조한 경우	상습성이 없는 경우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있는 경우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제명	-	
	②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에 참여한 경우	상습성이 없는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상습성이 있는 경우 –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불법적으로 스포츠 대상 베팅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사이트를 개설 혹은 운영에 가담한 경우					
불법베팅 외 불법도박	① 불법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자격정지, 제명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불법도박 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⁶ '불법베팅'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 알선 및 방조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동일 행위를 말한다.

13. 대회규정 위반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 ·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① 부정선수의 대회 참가 ⁷	출전정지 1년 이하 미등록 선수의 경우 향후 3년간 등록금지	자격정지 3년 이상 – 무기한 자격정지	교사시 자격정지 1년 이상 – 무기한 자격정지	-	-	-
② 출전정지 선수의 경기 출전 ⁸	고의성 없을 경우	출전정지 3개월 이하	출전정지 6개월 이하	자격정지 1년 이하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
	고의성 있을 경우	자격정지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③ 대회 또는 경기출전 포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제외)		자격정지 1년 이하				-
④ 경기도중 운동장 이탈 또는 이탈 교사	출전정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자격정지 1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하			
⑤ 심판판정 불복 및 고의적 경기 지연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⑥ 무자격/미등록 지도자(임원)의 지도 행위(벤치 착석 및 경기장 외 지시행위 포함)	경고 – 자격정지 2년 이하 (지도받는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 (지도자·임원 등록금지)	-			

⁷ '부정선수의 대회참가'라 함은 타 등록팀 선수·미등록 선수를 소속 등록팀 선수의 유니폼을 입히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회·경기에 출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소속 등록팀 선수 사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⁸ '출전정지 선수의 경기출전'이라 함은 어느 선수가 경고누적이나 퇴장, 기타 사유로 해당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출전한 행위를 말한다.

14.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축구협회·단체·국가대표팀·축구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 1 항부터 제 14 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내용	대상 및 징계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팀 임원	협회·시도협회·연맹 임원	심판, 감독관	팀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① 협회 정관 위반	경고 – 제명				벌금, 출전정지, 승점감점, 하위리그 강등, 자격정지, 제명	
	② 등록규정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제명				
	③ 각급 대표팀 규정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해임	-			
	④ 기타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경고 – 무기한 자격정지	경고 – 제명				
사회적 물의 및 품의 훼손	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축구인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	
	② 과실로 인한 행위 등 혐의가 경미한 경우	경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③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기타	가. 기간 단위의 징계는 해당 기간 중에 진행되는 경기 수로 전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선수, 지도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속 등록팀 지도자 및 등록팀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등록팀 지도자 및 등록팀에 대하여도 관련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다.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라. 본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내외의 사법기관에 의하여 유죄로 판단된 사항의 경우는 사회적 물의 및 품의 훼손을 적용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23. 7. 25.>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유형별 징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 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 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 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 기준
1. 심판, 감독관, 임원(주최자)	가. 심판배정상 불공정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 무기한 자격정지
	나.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다.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 이상 – 무기한 자격정지
2.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가. 폭언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5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다.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라.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마.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제명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바.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6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사.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자격정지 1년이상

3. 선수	가.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자격정지 2년 이하
	나. 심판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1년 이상 – 제명
	다. 선수상호간 폭행	
	○ 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 제명
	○ 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라. 시설 및 기물 파괴	출전정지 3개월 이상(손해배상 병과)
	마.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1년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폭언	1년 이상 3년 이하 자격정지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5년 이상 10년 이하 자격정지
	다. 물의 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 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 제명
	○ 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 제명
	마. 시설 및 기물파괴	1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정지(손해배상 병과)
5. 단체(팀)	바.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음주, 소란 등)	출전정지 6개월 이하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6. 관중 또는 불특정 다수, 기타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가. 경기장 무단 난입	
	나. 시설 및 기물 파괴	
	다. 폭력 조장·선동 및 오물 투척	
	라. 건전한 응원 풍토 위반	형사고발 및 출입금지

징계의 감경기준(제 19 조 관련)

제 19 조, 제 22 조 및 제 25 조에 따라 인정 또는 확정된 징계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감경 가능한 징계
제명	해임
해임	자격정지 (자격정지 3년 이상 7년 이하)
자격정지	자격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출전정지	출전정지 (인정 또는 확정된 출전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강등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 25 조의 2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 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 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 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 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 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 배	공금 횡령· 유용액의 2 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 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 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